



제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 제한 등〉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90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공공기관 직원 추가(안 제53조의3)	2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 금 등의 지급 제한(안 제53조의4 신설)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위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 23.

다. 회 부 일 : 2025. 1.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이 없음.

이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공공기관 직원 추가(안 제53조의3)

현 행	개 정 안
○ <u>임원의 의원면직의 제한</u> -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공기관 <u>임원</u> 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수사·감사 중인 경우 등에 해당 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u>임직원의 의원면직의 제한</u> -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공기관 <u>임직원</u> 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수사·감사 중인 경우 등에 해당 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현행법 제53조의3¹⁾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수사·감사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의원면직 제한 대상을 공공기관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에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하여 의원면직 제한을 둔 것은 비위 혐의가 있는 임원이 자의로 퇴직하여 해임이나 파면에 따른 불이익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3.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4.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②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원의 제청권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할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의원면직 제한 대상자를 개정안과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하는 경우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기관이 갖는 공익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직원의 의원면직 제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현행법 체계상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이라는 원칙 하에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 관리 등 운영에 관한 경영지침을 정하고²⁾, 각 공공기관은 이러한 경영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조직·인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는 그 임면권자 및 임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직원의 채용이나 징계 등 인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 경영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0조(경영지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내부규정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이처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에서 그 채용 절차나 징계 등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원의 의원면직 제한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현행 법률의 체계에 부합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재에도 각 기관의 내부 규정 등으로 직원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³⁾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수사 중인 경우나 감사 관련 기관에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의결 요구 중인 경우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1조(의원면직의 제한)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이하 이 조에서 “면직 제한자”라 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감사 관련 기관에서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는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내부규정 등을 통해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내부규정 등에서 직원의 의원면직 제한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할 개정의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 제한 등(안 제53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u>금고 이상의 형 확정 또는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임직원의 퇴직금·명예퇴직수당 제한</u>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임직원의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⁵⁾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면직 제한자에 대한 징계를 통해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감액되도록 하고, 그 외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개별 공공기관은 자체 규정을 통해 비위행위자 등에 대해 퇴직금 등을 일부 감액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임직원의 퇴직금

5)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1조(의원면직의 제한) ③ 면직 제한자에 대하여는 비위의 정도 등에 상응하여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항 각 호의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징계 처분함으로써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감액되도록 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여 및 명예퇴직수당을 감액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 하려는 것임.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6)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나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해임된 경우 공무원의 사례와 같이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수당을 줄여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인정됨.

6)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② ~ ④ (생략)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급여는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므로⁷⁾ 이를 감액할 경우 재산권에 과도한 제약에 해당할 수 있음.

둘째,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신분이며,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⁸⁾에 따라 법령에 그 하한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하여진 하한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⁹⁾임.

따라서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파면·해임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감액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하여진 수준 이

7) 대법원 2007.3.30., 선고 2004다8333판결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9) 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판결

※ 신·구조문 대비표

– 9 –

현 행	개 정 안
여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원의 제청권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할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u><신 설></u>	----- ----- ----- ----- ----- -----. <u>제53조의4(징계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u> <u>2.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u> <u>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해임에 준</u>

현 행	개 정 안
	<u>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문 의 처

02)6788-5157